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9

2023/4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법원

국제사법재판소(ICJ) 2

ICJ 기후변화 국가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절차에 PNAO, IUCN등 국제기구 절차 개입 승인

국제기구

국제해저기구(ISA) 6

ISA 제29차 법률기술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9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관한 공개 토론회 개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12

대륙붕한계위원회, 제60차 회의 개최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15

피테리스 필데고비치와 시아노스스타 대 노르웨이 사건

지역별 동향

아시아/북아메리카 18

미국 미국·일본·필리핀 3국 동맹
일본
필리핀

오세아니아 22

호주 호주, 동남아시아를 위한 해양안보 자금 지원 발표

중남미/중동 24

스웨즈 운하 UNCTAD, 글로벌 운하 폐쇄에 따른 영향 보고서
파나마 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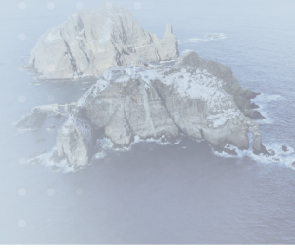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전문연구원 민영훈

ICJ 기후변화 국가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절차에 PNAO, IUCN 등 국제기구 절차 개입 승인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 PNAO, IUCN 등 참여 승인

2024년 3월 4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나우루협정사무소 당사국(PNAO,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Office)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무 권고적 의견(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on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승인은 PNAO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PNAO는 1982년 공동어족자원 어업관리 협력에 관한 나우루 협정(1982 Nauru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of Common Stocks)에 의해 설립되었다.

ICJ는 재판소 규정 제66조에 따라 PNAO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권고적 의견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결정하고 PNAO가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하도록 승인했다. ICJ 승인에 따라 PNAO는 향후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2024년 3월 22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2024년 6월 24일까지 타국제기구 또는 국가들이 제출한 서면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PNAO는 향후 구두절차 등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추후 ICJ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그림 1. ICJ보도자료 - PNAO 권고적 의견 절차 승인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Request for Advisory Opinion)The Court authorizes the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Office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HE HAGUE, 4 March 2024.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s authorized the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Office (PNAO), at its request, to participate in the advisory proceedings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The PNAO was established under the 1982 Nauru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of Common Stocks.

Pursuant to Article 66 of its Statute,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PNAO is likely to be able to furnish information on the questions submitted to it by the General Assembly. The PNAO may therefore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n those questions, and written comments on any written statements made by States or other organizations, within the time-limits as extended by President Donoghue in her [Order of 15 December 2023](#), namely 22 March 2024 and 24 June 2024, respectively.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그림 출처: IC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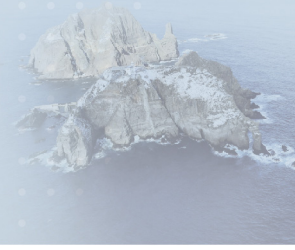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국제사법재판소

ICJ

ICJ는 현재 2023년 유엔총회(UNGA)로부터 요청된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서면절차를 진행 중이다. ICJ는 일반적으로 권고적 의견 요청을 받은 후 수일 이내 관련 질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와 국제기구 목록을 작성한다. ICJ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ICJ에 권고적 의견 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ICJ는 권고적 의견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일반적으로 정부간 기구에 한정하여 승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ICJ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기후변화 국가의무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하도록 승인하면서 ICJ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형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CJ규정 제66조상 국제기구

ICJ는 IUCN을 이번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하도록 승인하면서 재판소 규정 제66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ICJ는 재판소 규정 제66조에 따라 관련 권고적 의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를 재판소가 승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승인에 대한 2가지 기준으로서 1) 국제기구일 것과 2) 권고적 의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제시했다. IUCN의 경우 2번째 기준은 연맹의 규정에 따라 쉽게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규정은 IUCN의 목적을 자연 및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 및 관련 정보의 전파,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ICJ는 다소 확장된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IUCN은 그 연맹의 회원으로서 국가,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대학 등 연구기관, 업계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CJ가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를 승인해 왔던 전형적인 국제기구, 즉 정부간 국제기구의 형태와 다소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ICJ규정 제66조에서 언급된 국제기구가 단순히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 국제기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ICJ가 고려하기에 국제기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ICJ규칙(Rules of the Court) 제69조제4항이 공적 국제기구(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를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tes)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당해 규칙 제69조 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ICJ규정 제66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ICJ규정 제66조에서 의미하는 국제기구는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와 비정부기구(international



국제사법재판소

ICJ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CJ Practice Direction XII상 국제기구의 역할 구분

반면, 국가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따라야 할 사항으로 ICJ가 채택한 Practice Direction은 정부간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를 구분한다. 특히 Practice Direction XII는 국제비정부기구가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서면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러한 문서는 사건문서로 취급되기보다 출판물(publications)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정부기구가 서면의견 또는 구두의견을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제출 또는 표시하더라도 이들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판물로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재판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건문서로 고려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ICJ가 기후변화 국가의무 권고적 의견 절차에 대한 IUCN의 참여를 승인한 ICJ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IUCN을 비정부기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ICJ가 정부간 기구의 권고적 의견 절차 참여를 승인할 때와 같은 언어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IUCN은 정부간 기구와 마찬가지로 ICJ의 서면절차와 서면의견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현재까지 ICJ가 비정부기구를 절차 참여에 승인한 경우는 오직 한번 뿐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무 권고적 의견 절차에 IUCN의 참여를 승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승인은 ICJ규정 제66조상 재판소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성격이 단순히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에서 벗어나 문제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ICJ는 이러한 국제기구 절차 참여 승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 또는 기준 등을 밝히고 있지 않아, 어떠한 비정부기구가 국제기구로서 실제로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의 활동은 앞으로 국제법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국가의 정책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이를 국제법원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간 기구 활동 이외 전문적인 비정부 기구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분야별 비정부 기구를 구분하여 학·연·민이 적절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처 : [1] Danilo B. Garrido Alves (2023.7.23.),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JIL:Talk!*, <https://www.ejiltalk.org/the-concept-of-international-organization-in-the-practice-of-the-international-court-of-justice/>(검색일: 2024.3.15.) [2] ICJ(2023.12.15.),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87/187-20231215-ord-01-00-en.pdf>(검색일: 2024.3.15.) [3] ICJ, Advisory Jurisdiction, <https://www.icj-cij.org/advisory-jurisdiction>(검색일: 2024.3.15.) [4] ICJ, Practice Directions, <https://www.icj-cij.org/practice-directions>(검색일: 2024.3.15.) [5] ICJ Press Release(2024.3.4.), The Court authorizes the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Office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87/187-20240304-pre-01-00-en.pdf>(검색일: 2024.3.15.) [6] ICJ, Rules of Court (1978), <https://www.icj-cij.org/rules>(검색일: 2024.3.15.) [7] ICJ,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ttps://www.icj-cij.org/statute>(검색일: 2024.3.15.)



국제해저기구

ISA

전문연구원 민영훈

ISA 제29차 법률기술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2024년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회(LTC,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3월 4일~15일)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ISA 이사회가 3월 18일~29일까지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림 2. 제29차 ISA LTC 대표단 사진



그림 출처: ISA

ISA 제29차 법률기술위원회 주요 내용

LTC는 ISA 이사회의 여러 기구 중 하나로 현재 4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LTC 41명의 위원들은 5년을 임기로 선출되며,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은 2023년 1월 1일에 그 임기를 시작했다. LTC의 주요 기능은 해저 개발 작업계획 신청서 검토, 탐사 또는 광물 활동 감독(계약자의 연차 보고서 검토 포함), 환경 관리 계획 개발, 심해저 활동의 환경 영향 평가, 심해저 활동 관련 규칙, 규정, 절차 작성, 비생물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관련 이사회 권고 등이다.

올해 제29차 LTC는 현재 체결된 탐사 계약을 검토하고 탐사 작업계획에 따라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인도에서 제출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polymetallic sulphidesand) 및 망간각(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탐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관련 절차와

국제해저기구 ISA

적용가능한 규정에 대해 권고했다.

LTC는 또한 직전회기(제28차)에 연속하여, 제27차 이사회에서 위임한 구속력 있는 환경임계치(environmental threshold value) 개발 논의를 지속했으며,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의 개발, 승인, 검토를 위한 표준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지속했다.

제29차 ISA 이사회 주요내용

제29차 ISA 이사회는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해저 자원 개발 규정 초안 통합 문서를 처음으로 검토 및 협상할 예정이며, 이후 회기간 작업반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를 협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회기간 작업반에서는 검사 절차(inspection mechanism), 연안국 의무(coastal state obligations), 수중문화유산(underwater cultural heritage), 환경영향평가 절차(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시험 채굴(test mining), 안전보건계획(health and safety plans)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해저 자원 개발 규정 초안에 관한 논의는 주제별로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제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심해저 광물 계약 관련 재정 문제, 검사·준수·집행, 제도 문제, 기타 주제 등 5가지로 나누어질 예정이다.

그림 3. 지역별 ISA 탐사계약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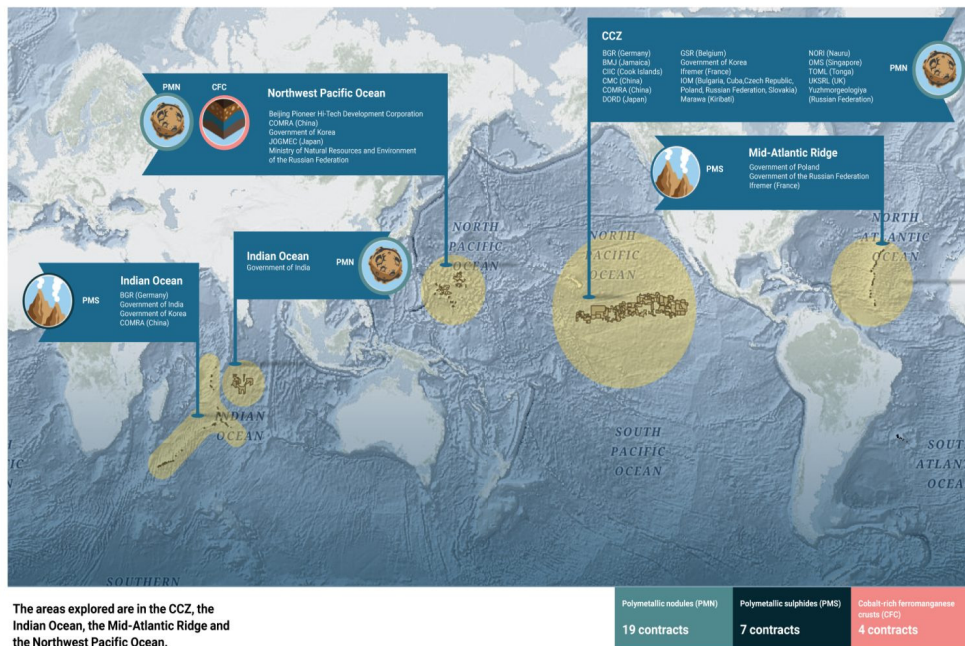


그림 출처: ISA



국제해저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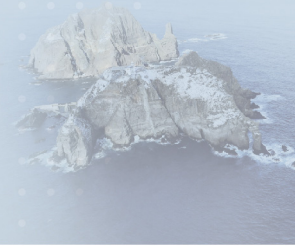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ISA

정책적 함의

ISA는 심해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 논의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핵심원료로 심해 광물 자원이 확인되면서 심해저 광물 개발을 관리하는 ISA의 균형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심해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입장은 현재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현재까지 24개국이 심해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유예를 선포하거나 사전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개발 중단을 지지했다. 이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심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파괴적인 심해 광물 자원 활동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편 국가들은 상업적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ISA의 개발 규정 채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육상 광물 자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심해저의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망간단괴를 조속히 개발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SA가 개발 규정을 조속히 채택하여 개발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SA와 3건의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클라리온-클리퍼톤 지역(Clarion-Clipperton Zone) 등에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주요 선진국 등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국가들이 개발 중단을 선포하고 있어 심해저 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유럽 등 일부 서방 주요국들이 환경 보호를 강조하며 개발 중지를 선언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광물 자원 개발 주장은 기타 외교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주요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탐사자, 개발자, 주요국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여 심해저 개발의 상업적,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 등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IISD Earth Negotiations Bulletin, Highlights and images for 22 March 2024, <https://enb.iisd.org/international-seabed-authority-isa-council-29-1-22mar2024>(검색일: 2024.3.23.) [2] ISA (2024.3.5.), ISA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kicks off Part I of its 29th session, <https://www.isa.org.jm/news/isa-legal-and-technical-commission-kicks-off-part-i-of-its-29th-session/>(검색일: 2024.3.15.) [3] ISA, Exploration areas, <https://www.isa.org.jm/exploration-contracts/exploration-areas/>(검색일: 2024.3.15.) [4] ISA, The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https://www.isa.org.jm/organs/the-legal-and-technical-commission/#:~:text=Overview,nominated%20by%20the%20member%20States.>(검색일: 2024.3.15.)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SC

전문연구원 이서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관한 공개 토론회 개최

안전보장이사회는 2024년 2월 13일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주제는 “기후변화와 식량불안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14일에는 아일랜드의 페르갈 마이텐(Fergal Mythen) 대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분쟁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면서 현재 유엔 전체가 이 의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 성명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엔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르갈 마이텐 대사는 해수면 상승의 법적 측면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저지대 국가와 소도서국이 직면한 전례 없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국제법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국제법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페르갈 마이텐 대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일랜드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아일랜드는 해수면 상승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요 다자포럼에서 자국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군소도서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과 협력해왔음을 밝혔다. 이에 아일랜드는 현재 이 주제가 국제법위원회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해양법, 국가 관련 문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보호 관련 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아일랜드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페르갈 마이텐 대사의 성명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식량안보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올해 2월 13일에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론회에서 짐 리프웨(Jeem Lippwe) 상임대표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짐 리프웨 상임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해 요리, 식수, 농업에 사용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SC

대수층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선진국들의 지원 요청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변화가 식량불안을 어떻게 야기하는지, 미크로네시아와 같이 특별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식량안보는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짐 리프웨 상임대표는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기후, 평화 및 안보 특별대표의 지속적인 임명을 제시하였다.

그림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짐 리프웨 상임대표



그림 출처: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수온¹⁾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어획강도, 양식환경 등 특성에 따라 수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가 수산업과 수산물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를 분석하여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응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강화 등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1) 바다 표면과 가까운 해수를 표층수라고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SC

출처 : [1]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2024.02.14.), Security Council Open Debate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Food Insecurity o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ttps://unmission.fm/security-council-open-debate-on-the-impact-of-climate-change-and-food-insecurity-on-the-maintenance-of-international-peace-and-security/>(검색일: 2024.03.22.)
[2] Permanent mission of Ireland to the United Nations(2023. 02.14), UN Security Council Open Debate Sea-Level Ris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ttps://www.ireland.ie/en/un/newyork/news-and-speeches/security-council-statements/un-security-council-open-debate-sea-level-rise-implications-for-international-peace-and-security/>(검색일: 2024.03.22.)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대륙붕한계위원회, 제60차 회의 개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2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또는 수문학 분야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은 지리적 대표성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국민 중 선출하고, 5년 임기로 활동한다. 5개 지역그룹별(아시아, 아프리카, 동구, 중남미, 서구)로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한 정보를 근거로 권고한다. 권고안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공한 과학 및 기술 데이터와 기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권고의 내용은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곽 한계 설정 관련 사안이다. 위원회 권고안은 반대편 또는 인접국 간 경계획정 관련 문제나 육상 또는 해양분쟁 당사자인 국가의 입장 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다른 부분이나 타 조약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륙붕한계위원회 회의는 절차규칙 23에 따라 비공개로 개최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따라, 모든 도표와 좌표를 포함한 제출물의 요약본을 유엔회원국과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에 배포되는 대륙붕 통보를 통해 공개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 제60차 회의 내용

2024년 1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유엔본부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 제6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본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르투갈과 미크로네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의 제출 프로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둘째, 대륙붕한계위원회 업무방식 검토, 절차규칙 개정, 교육과정 업데이트, 기술 게시판 개발 등을 고려하였다. 셋째, 절차규칙 부속서 III에 관한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절차규칙 부속서 III의 개정 목적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실행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절차규칙 개정 초안을 초안 작성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였고, 제61차 회의에서 개정 초안을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준비, 작성 및 유지에 필요한 과학 및 기술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국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200해리 너머까지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연안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해 연안국의 지나친 관할권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후, 많은 연안국이 자국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각 국의 신청을 검토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하였고, 신청한 내용이 대륙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권고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기능, 성격, 심사제도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발족 이후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일 공동개발구역(JDZ)과 관련하여 대륙붕 한계 문제가 있으므로, 대륙붕한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 할 필요가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표 1. 대륙붕한계위원회 제60차 회의 내용

1	Opening of the sixtieth session.
2	Minute of silent prayer or meditation.
3	Solemn declaration by one newly elected member of the Commission.
4	Adoption of the agenda.
5	Election of one Vice-Chair.
6	Organization of work.
7	Appointment of one newly elected member to subcommissions and other subsidiary bodies.
8	Workload of the Commission and working conditions of its members.
9	Consideration of the partial submission made by Mauritius in respect of the region of Rodrigues Island.
10	Consideration of the partial amended submission made by Palau in respect of the North Area.
11	Consideration of the submission made by Portugal.
12	Consideration of the partial submission made by Spain in respect of the area of Galicia.
13	Consideration of the submission made by Trinidad and Tobago.
14	Consideration of the submission made by Namibia.
15	Consideration of revised submissions: (a) Partial revised submission made by Brazil in respect of the Brazilian equatorial margin; (b) Revised submission made by the Cook Islands concerning the Manihiki Plateau; (c) Partial revised submission made by Iceland in respect of the western, southern and south-eastern parts of the Reykjanes Ridge.
16	Consideration of other submissions made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8, of the Convention: presentation of the partial submission made by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n respect of the area north of Yap.
17	Report of the Chair of the Committee on Confidentiality.
18	Report of the Chair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Committee.
19	Other matters.

그림 출처: CLCS/60/1

출처 : [1] United Nations(2024.03.11.), Commission on Limits of Continental Shelf Concludes Its Sixtieth Session,<https://press.un.org/en/2024/sea2194.doc.htm>(검색일: 2024.03.22.)



국제투자분쟁센터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피테리스 필데고비치와 시아노스스타 대 노르웨이 사건 (The Case of Peteris Pildegovics and Sia North Star v. Norway)

2023년 12월 22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중재판정부는 *Peteris Pildegovics and Sia North Star v. Norway*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해양법과 투자법의 관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사실적 배경

필데고비치(Pildegovics)와 필데고비치의 소속 회사 시아 노스 스타(청구인)는 바렌츠해 허점 지역(sector of the Loophole)과 스발바르 군도 해양 구역에서 대게잡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허점 지역의 해저는 노르웨이의 확장 대륙붕(10.81%)과 러시아 연방의 대륙붕(89.19%)으로 구분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에 따라, 두 연안국인 노르웨이와 러시아 연방은 허점 지역 해역의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 권리에는 정착성 어종의 어획활동에 관한 배타적 권리가 포함되었다.

그림 5. 바렌츠해 허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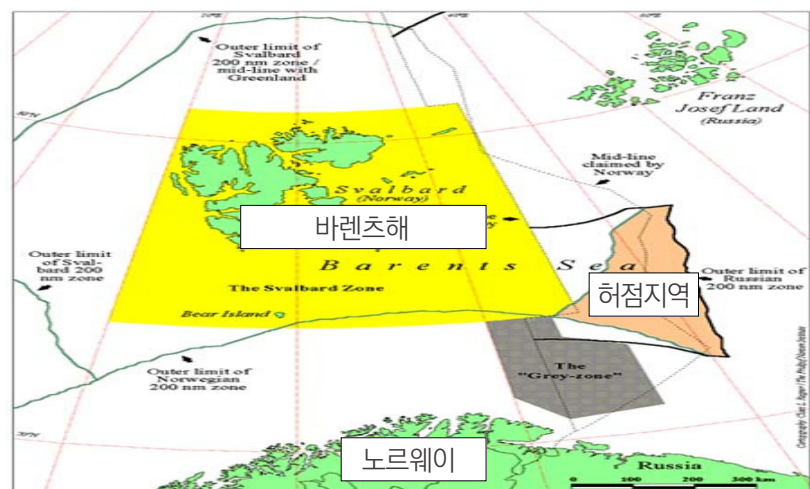


그림 출처: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IN THE BARENTS SEA



국제투자분쟁센터

2020년, 청구인은 노르웨이가 1992년 노르웨이-라트비아 양자간 투자 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 제3조(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 및 보호) 및 제6조(수용)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르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노르웨이 정부가 2015년에 일련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대게잡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 결과

먼저, 중재판정부가 노르웨이의 BIT 제3조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노르웨이의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대게를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제4항2)에 따른 정착성 어종으로 보았으나, 대게가 최근에서야 허점 지역에 출현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2014년 이전에 대게를 정착성 어종으로 선언할 수 없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2015년 12월 이전, 외국 선박의 대게잡이에 관한 노르웨이의 법률이 허점 수역(sector of the Loophole)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특정 활동을 금지 및 제한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 서신에서 노르웨이가 허점 수역에서 대게잡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투자자 수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노르웨이가 노스스타의 허점 수역 일부에 영업허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르웨이가 BIT 제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책적 시사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투자보호 관련 규칙 이외 “다른 국제법 규칙”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판정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하도록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BIT 이외 다른 조약에 관해 판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고려하여 BIT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BIT 위반 여부를 판단시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대게의 정착성 어종 해당 여부는 법의 문제라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대게가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4항에 따른 정착성 어종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의무는 없었으나,

2)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국제투자분쟁센터

노르웨이의 BIT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을 내려야 했다.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노르웨이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주권적 권리 행사를 위해 채택한 방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투자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규정 이외 다른 국제법 규정을 고려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판정에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c)3)에 따라, 투자법이 국제공법이라는 광범위한 틀에 따라 적용 및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려는 의지는 향후 투자 청구시 참고가능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1] Kluwer Arbitration Blog(2024. 3.11.), Relevance of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Investment Arbitration: The Case of Peteris Pildegovics and Sia North Star v. Norway, <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4/03/11/relevance-of-other-rules-of-international-law-in-investment-arbitration-the-case-of-peteris-pildegovics-and-sia-north-star-v-norway/>(검색일: 2024.3.22.)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제31조 제3항 ©는 조약해석 시 문맥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북아메리카 미국, 일본,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서희

미국·일본·필리핀 3국 동맹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중국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불법행위 때문이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에서 배회하는 시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선박과 필리핀 선박의 충돌이 잦은 편이다.

지난 3월 5일에 중국선박은 BRP 시에라 마드레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군인들에게 식량을 수송하고 있었던 필리핀 보급선을 대상으로 물대포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필리핀 선박이 일부 파괴되었고, 필리핀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림 6. 3월 5일, 중국 해안경비선으로부터 물대포를 맞고 있는 필리핀 보급선



그림 출처: 한국일보

또한,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군용기와 모래 준설편⁴⁾은 대만

4) 중국의 불법 모래 준설편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필리핀에서 대만에 이르는 지역 바다 바닥의 모래를 퍼올리면서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아시아, 북아메리카

미국, 일본, 필리핀

해역에 끊임없이 침입하여 대만군대와 범 집행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이하, “3국”)은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3국 모두 10년 이상 중국의 회색지대⁵⁾ 전술에 관한 대응책을 강구해왔으나 3국 간 공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3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행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군사적·경제적인 문제를 조율하여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 이해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3국 동맹관계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인 경쟁관계이다. 미국 국방부는 2023년에 발간한 보고서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 및 안보 발전”에서 중국이 국제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및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자 한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은 중국의 가장 큰 피해국이다. 중국은 필리핀을 미국에 의존하는 행위자로 묘사하면서, 필리핀의 주도권을 박탈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는 필리핀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2012년 스카보러 썰 위기 당시 필리핀을 지원하지 않았고, 2019년까지 남중국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맹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2022년 이후부터 회색지대 우발 상황시 필리핀과의 공동 대응을 위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만약 미국이 필리핀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역내 미국동맹의 신뢰와 전 세계의 해양의 자유가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미국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23년 10월 말에 발생한 필리핀과 중국 선박 간 두 차례 충돌과 관련하여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하였다.

미국-필리핀의 동맹관계는 일본-필리핀 동맹관계에 비해 견고하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이 세 국가를 연결하는 유일한 요인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일본-필리핀 동맹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현재, 양국은 군사협력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기본적인 협력의 틀은 아직 구상 중이다. 또한, 공식적인 군사 채널 외에 필리핀과 일본 간 교류가 활발한 편은

5)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아시아, 북아메리카 미국, 일본, 필리핀

아니라고 한다.

현재, 일본은 필리핀과의 관계를 “준동맹급”으로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필리핀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필리핀에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불법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안보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대만 급변사태시, 필리핀에 대한 지원 확대

최근, 대만 급변상태가 발발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만약 대만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만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필리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만 급변사태가 남중국해로 확산되면, 필리핀은 자국의 영토와 해역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필리핀의 경제적 상황이다. 필리핀은 주요 광물과 전략 자원의 비축량이 부족하고 공급망이 쉽게 중단되며, 군수품과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쟁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부의 대규모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들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은 군도 국가로서 외부 공격과 에너지 및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다. 필리핀의 에너지 및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과 미국의 안보 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필리핀은 국내 생산 부재로 물자와 식량을 거의 비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필리핀은 큰 위험이 처하게 된다.

이처럼 필리핀 단독으로 대만 급변사태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3국은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즉, 3국은 필리핀의 경제 유지를 위한 지원과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10일, 3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3국의 정상회담은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수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의 대부분이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중국해의 분쟁 상황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아시아, 북아메리카 미국, 일본, 필리핀

줄 수 있다. 또한, 대만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해협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일본, 필리핀 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협력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7. 동·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위치



그림 출처: 동아일보

출처 : [1] United Nations(2024.03.11.), Commission on Limits of Continental Shelf Concludes Its Sixtieth Session, <https://press.un.org/en/2024/sea2194.doc.htm>(검색일: 2024.03.22.) [2] U.S. EMBASSY IN SINGAPORE(2024.03.11.), U.S. SUPPORT FOR THE PHILIPPINES IN THE SOUTH CHINA SEA, <https://sg.usembassy.gov/u-s-support-for-the-philippines-in-the-south-china-sea-4/>(검색일: 2024.03.22.) [3]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Sustaining the U.S.-Philippines-Japan Triad, <https://www.csis.org/analysis/sustaining-us-philippines-japan-triad>(검색일: 2024.03.22.) [4] 연합뉴스(2024.03.13.), "내달 미일 정상회담 맞춰 필리핀까지 정상회담 조율"…中 견제,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3040500073?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검색일: 2024.03.22.)



오세아니아

호주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호주, 동남아시아를 위한 해양안보 자금 지원 발표

지난 3월 4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5일, 멜버른에서 “2024년 아세안⁶⁾-호주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호주가 아세안의 첫 대화 파트너가 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페니윙 호주 외무부 장관은 4월 3-6일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무역의 30%, 세계어장의 12%를 비롯하여 석유와 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에 남중국해 민병대 주둔을 35% 늘렸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무역의 중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의 영유권 주장이 충돌하는 분쟁지역이다.

페니윙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분쟁지역의 군사화를 포함하여 해양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며, 강압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방지, 메콩강 유역의 기후 변화로부터 담수자원의 보호 등 해양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이 지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페니윙은 멜버른의 한 연설에서 아세안과의 해양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556억 원(4,180만 미국 달러)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 자금은 해양법 집행, 해양환경 거버넌스 및 보호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니윙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메콩강 유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페니윙은 다가오는 4월 3-6일, 멜버른에서 개최될 2024년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호주와 아세

6)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고도 하며, 1967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도모와 지역안보 강화를 위해 창설되었다.



오세아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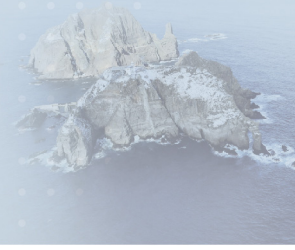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호주

안과의 관계 50주년을 기념하고 동티모르의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시사점

호주는 과거 한국전에 파병을 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협력해 온 우방국이다. 또한,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유사입장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호주가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아세안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세안의 동반자로서 해양안보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여 호주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출처 : [1] La Prensa Latina(2024.3.3.), Australia announces maritime security funding for Southeast Asian partners, <https://www.laprensa-latina.com/australia-announces-maritime-security-funding-for-southeast-asian-partners/>(검색일: 2024.03.22.)



중남미, 중동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전문연구원 민영훈

UNCTAD, 글로벌 운하 폐쇄에 따른 영향 보고서 발행

주요 해상무역로 폐쇄 영향

2023년 11월 시작된 수에즈 운하 폐쇄와 홍해 공격은 자유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파나마 운하 가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흑해 불안정은 글로벌 공급망의 대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

수에즈 운하의 교통량은 최근 2개월간 약 40%로 급감한 상태이며, 파나마 운하 교통량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년 전에 비해 약 50% 감소한 상태이다.

그림 8. 수에즈 운하 및 파나마 운하 교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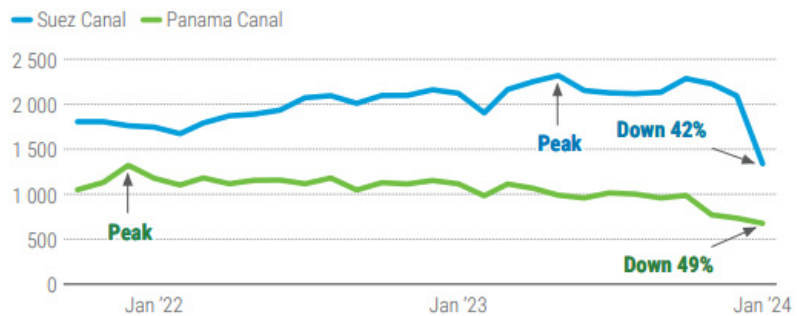


그림 출처: UNCTAD

Source: UNCTAD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Clarkson Research

수에즈 운하 폐쇄

수에즈 운하는 인도양을 통해 지중해 및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 중 하나이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의 경우 석유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있으며, 유럽 및 북아프리카의 경우 컨테이너선 등을 통해 생활 물자 등을 공급받고 있다. 2023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26,000여척에 달하며, 이 중 산적화물선은 28%, 유조선은 24% 컨테이너선은 23%에 해당한다. 특히 2023년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의 약 22%를 담당했으며, LNG선, 유조선, LPG선, 일반화물선의 전 세계 물동량 각각 10%, 9%, 7%, 4%를 담당했다. 현재 이러한 수에즈 운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중남미, 중동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있는 대안항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아시아-유럽, 아시아-북아프리카 무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리의 항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의 컨테이너선 교통량은 2023년 12월에 비해 약 82%까지 감소했다.

그림 9. 컨테이너선 수에즈 운하 교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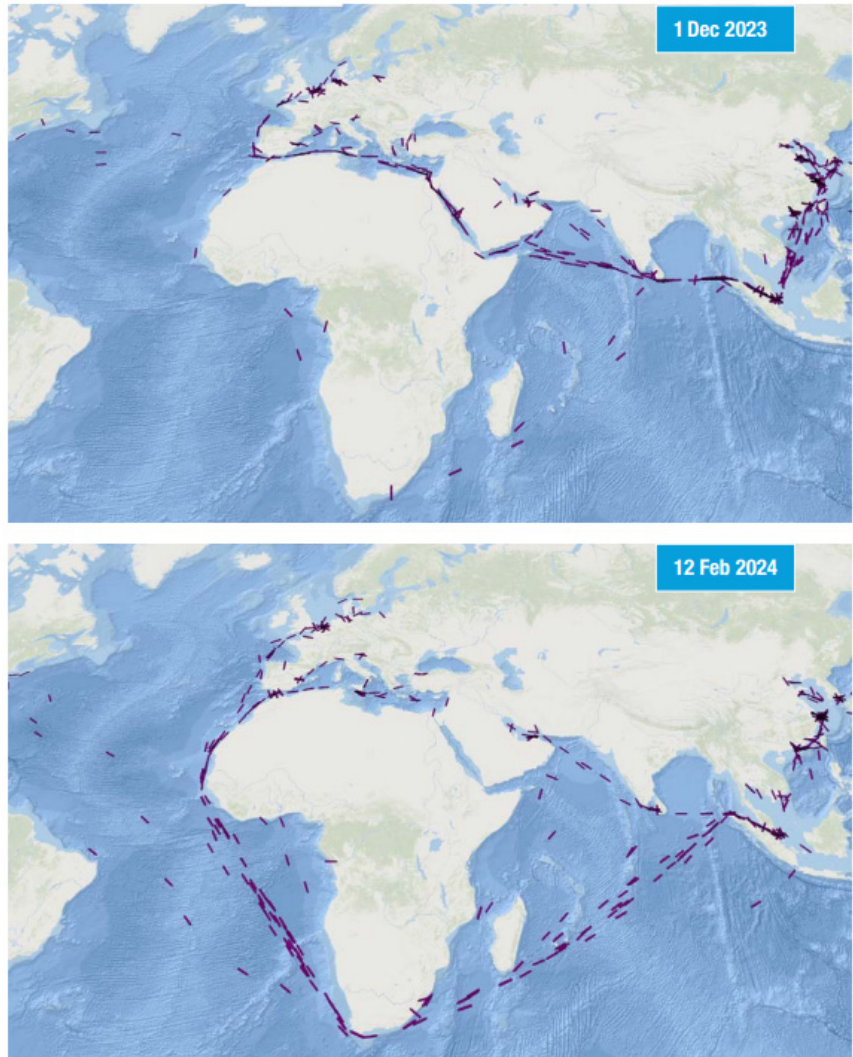


그림 출처: UNCTAD

Source: Marine Benchmark
Note: container ships of 13500TEU and above

결국, 많은 경우 해운선사들은 희망봉을 지나 지중해로 진입하는 대안항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희망봉을 지난 선박 톤수의 양이 약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월까지 약 621척의 컨테이너선이 희망봉을 지나는 항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선박은 항해 거리가 급격히 증가하여 물류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중남미, 중동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네덜란드로 가는 유조선의 경우 항해 거리가 10,358 km에서 17,975 km로 증가하여 항해거리가 약 80% 증가했다.

그림 10. 흑해, 홍해, 파나마 운하 사건으로 인한 항해거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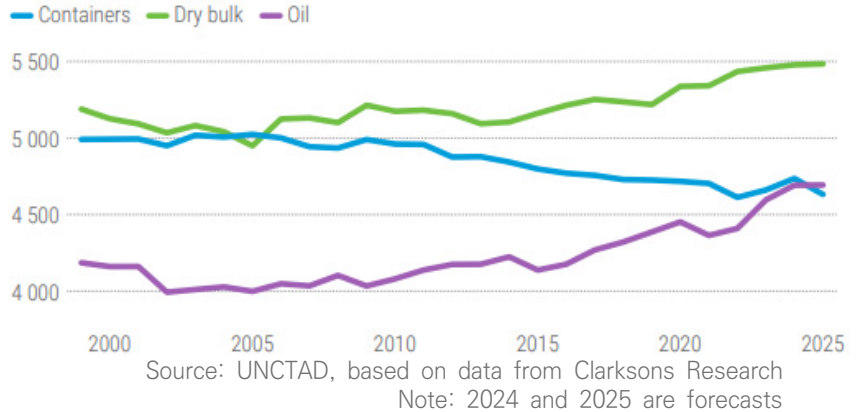


그림 출처: UNCTAD

파나마 운하 폐쇄

현재 파나마 운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수위로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 또한 현재 컨테이너선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산적화물선, 가스선, 화학제품운반선, 자동차운반선 등이 운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는 매년 13,0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파나마 운하 통과량이 36척에서 22척으로 감소했으며, 이 숫자는 2024년 2월까지 약 18척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 통과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의 경우 수에즈 운하로 항로를 수정하여 파나마 운하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수에즈 운하의 교통량이 증가했으나, 2023년 12월 이후 홍해 사건으로 전 세계 물동량의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파나마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21년 파나마 운하 전체 물동량의 약 72%를 미국이 담당했다. 다음으로 파나마 운하를 가장 많이 이용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운하 물동량의 약 22.5%를 담당했다. 특히 파나마 운하 폐쇄는 이 운하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중소국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미 서부 해안에 위치한 칠레는 전체 해외 무역의 약 22%를 파나마 운하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페루는 약 22%의 무역을, 에콰도르는 약 26%의 무역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중남미, 중동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항해거리 증가

항해거리 증가는 당해 항로에 추가적인 선박 투입을 요구한다. 또한 항해거리 증가와 추가 선박 투입은 연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에 민감한 화물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한편, 항해거리 증가는 해적 위협 등을 증가시켜 보안에 관한 비용 또한 증가시키고, 결국 이러한 위험 요소의 증가는 물류 지연, 화물 피해에 대한 보험 및 민사소송의 급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더불어 선박의 항로 재편성과 장비의 재배치 등은 물류시스템의 복잡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2023년 12월부터 선가 및 선박용선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속 및 탄소배출 증가

홍해 및 수에즈 운하의 폐쇄는 파나마 운하의 위험요소와 연결되어 선박 항로 변경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증가한 항로거리는 물류 시간 단축을 위해 선박이 속력을 증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속의 증가는 연료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속 1%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2.2% 연료를 더 소모한다. 따라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선속 14노트(knots)를 16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약 31%의 연료를 더 소모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연료유 소모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북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한 항차에 약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안항로를 통한 항로거리 증가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2024년초 홍해 위험 증가와 완화에 따른 선속 증가 추이



그림 출처: UNCTAD

Source: UNCTAD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Marine Benchmark
Note: Container ships of 13500 TEU and above



중남미, 중동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정책적 함의

현재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홍해 사건, 흑해 사건(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의 폐쇄는 해운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에 이례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곡물무역이 우크라이나 흑해 지역에서 남미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나마 및 수에즈 운하 폐쇄는 글로벌 공급망의 비용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해상교통로의 혼란 등으로 인한 향후 영향 및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무역을 해상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물류비 증가는 국내 물가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 요소 및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C.H.Robinson(Mike Short) (2024.3.6.), Red Sea and Panama Canal Disruptions: 2024 Implications for Shippers, [https://www.chrobinson.com/ko-kr/resources/blog/shipping-disruptions-red-sea-panama-canal/\(2024.3.15.\)](https://www.chrobinson.com/ko-kr/resources/blog/shipping-disruptions-red-sea-panama-canal/(2024.3.15.)) [2] UNCTAD (2024), Navigating Troubled Waters, Impact to Global Trade of Disruption of Shipping Routes in the Red Sea, Black Sea and Panama Canal, UNCTAD Rapid Assessment,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osginf2024d2_en.pdf(검색일: 2024.3.15.)



3개월 내 행사계획

국제해저기구 법률 및 기술위원회 |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탐사 작업 계획 이행에 대한 정기 검토, 탐사 작업 계획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시행 현황 및 훈련 기회 할당, 심해저 활동에 대한 표준 및 지침 개발, 2023-2028년 당사국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검토, 환경 관리 계획 등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제29차 회의 | 2024년 3월 18일 ~ 3월 29일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법률 및 기술 위원회의 공석 선출, 승인된 탐사 작업 계획의 이행에 대한 정기 검토, 탐사 작업 계획 신청 검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해저기구(ISA) 간 양해각서, 예산안 검토 등

대한국제법학회 | 2024년 3월 30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 / 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
- 주요 내용 신진학자 학술대회 '뉴노멀(New Normal)'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 2024년 4월 8일 ~ 4월 9일 /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 주요 내용 니카라과의 독일 상대 '대량 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독일의 의무 위반 혐의 구두심의(니카라과 구두변론 4월 8일, 독일 구두변론 4월 9일)

국제법평론회 춘계학술대회 | 2024년 4월 26일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요 내용 미국의 국제적 합의 체결 관행,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적 확신 검증(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유전자원 기반 특허출처공개 의무